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56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장종태·소병훈·정동영

박정현 • 김영환 • 문진석

김선민ㆍ김 윤ㆍ김남희

이연희 • 박용갑 • 조승래

송재봉 • 황정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될 경우 지원금액이 감소하게 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실제로는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미치지 않는 금액이 지원되는 등 국가 지원금 액이 과소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한 국가의 책임있는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의 공단에 대한 지원금액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

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금액이 과소되는 경향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를 "전전년도 결산상"으로, "예상수입액의"를 "수입액의"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u>전전년도 결산상</u>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	<u>수입</u>		
<u>액의</u> 100분의 20에 <u>상당하는</u>	<u>액의해당하는</u>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